

## 6. 建設業體 診斷規則中 改正令

建設部令 第486號 1991. 6. 4

건설업체진단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9조(진단보수) 건설부장관이 영 제 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

사 기타 경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위탁하는 경우 그 보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.

진단받는 기관의 자산총액	진단보수	각 구간 사이에 있는 있는 자산총액에 해당하는 진단보수의 계산방법
1억원 미만	42만원	
1억원	54만원	자산총액이 1억원 초과 100억원 미만으로서 각 구간 사이에 있는 경우에 진단 보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1만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.
5억원	66만원	
10억원	78만원	
50억원	96만원	$\text{적하급진단보수} + \frac{(\text{적상급진단보수} - \text{적하급진단보수})}{(\text{적상급자산총액} - \text{적하급자산총액})} \times (\text{당해자산총액} - \text{적하급자산총액})$
100억원	132만원	1. 자산총액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32만원에 100억원마다 5만원을 더한 금액 2. 자산총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77만원에 1천억원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
1천억원	177만원	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▶

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위탁받은 공인회계사 등이 받는 보수의 현행기준은 12년전인 1979년 5월 18일에 조정된 것으로 그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, 위 보수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인회계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1991년 3월 18일에 조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규칙에 의한 진단보수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. 〈건설부 제공〉